제 3 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 조【계약기간】

1.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3.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수급자나 보호자가 희망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 9 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2.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4.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 서비스 계약체결 : 계약당사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시키고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6.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월 이용료】

1.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는다.
3.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	내 역
월 한도액	보험료	85%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의료급여수급자 25~50%의 경우
		6%	의료급여수급자 0~25%의 경우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5.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6.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8.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수가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가산금	심야(오후10시~오전6시)의 가산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가산			
	일요일·공휴일 가산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50%가산			

방문목욕	목욕차량이용 (차량내목욕)	목욕차량이용 (가정내목욕)	목욕차량 미 이용
	88,900	80,230	50,100
	단 , 40분~60분 미만은 위 금액의 80% 적용		
본인 부담금	이 금액의 15% 의료수급권자 25~50%는 9%, 의료수급권자 0~25%는 6%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제 11 조【기타 부담액】

1. 비 급여 이용 시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비급여 발생 시 대장에 정리한다.)
2. 수급자의 요청으로 장보기나 개인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함은 물론 선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로부터 개인물품 비용을 선불로 받아서 관리 할 경우 반드시 내역을 메모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구입비용을 대리 지불 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주어야 한다.(단, 사정이 있을 경우 후불로 받을 수도 있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 모두를 수급자(또는 보호자)부담 하여야 한다.

제 12 조【개인정보 보호】

1. 수급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에 보관 한다.
2.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계약자용)를 받아 개인 파일에 보관 한다.

제 13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하며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수급자 개개인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종교와 문화 활동을 인정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평등하게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수급자 개개인은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 어르신들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본 센터에서 급여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부당함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센터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월 한도액 초과에 대한 부담금은 100% 보호자에게 있다.
3. 인적사항이나 센터에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등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주케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급여제공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7. 기타 '센터'에서 서비스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요청에 따라 주어야 한다.
8. 수급자는 센터나 요양보호사에게 표준서비스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한다.

제 15 조【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보호자)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 2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11)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2) 표준서비스외의 부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요구하는 경우 (농사일, 애완견 관리. 수급자외 가족의 서비스 요구 등.....)등이 발생 했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